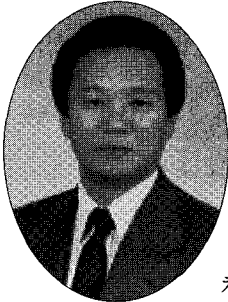


「공정거래사」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효율적 운영방안



이 병 주

공정위 총괄정책과장

1. 머리말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핵심은 시장경제의 창달에 있다. 시장경제란 각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모든 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지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창달이란 시장을 자유방임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경제주체가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할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시장에서 거래의 규칙(rule)을 확립하고, 위반자를 제재하는 공정거래정책이 경제정책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현대의 시장은 종래 생산자 중심(sellers' market)에서 소비자 중심(buyers' market)의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정책에 있어 소비자 보호문제도 직접적인 이슈로서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거래관행을 살펴보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직 많은 부문에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관행이나 담합 등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상당 부분은 경쟁정책이나 공정거래법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기업들은 자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잘 모르거나, 거래 상대방의 공정거래

법 위반행위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 등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결국 진정한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해서는 경쟁당국의 엄정한 법집행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부문에서 경쟁주창자 역할을 담당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나가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2. 공정거래사 제도는 왜 필요한가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공정거래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공정거래제도는 단순히 공정거래법 조문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순수한 법률지식 외에도 기업회계지식, 시장 구조 및 경쟁 정도, 거래 관행 등 시장상황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업종의 다양화, 전문화 등 다양하고 급속한 기업변화 추세를 볼 때 더욱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요구된다.

반면, 모든 기업이 이러한 능력을 갖춘 직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일반 소비자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공정거래 관련지식을 가지고 있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거래 관련 업무분야에 특화된 전문자격사(CFTA: Certified Fair Trade Attorney)의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은 중소기업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복잡하게 분화·발전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따라 사회 각분야에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자격사의 종류와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등 15개 자격에 26만명의 전문자격사들이 있다. 고도의 법률적, 경제적 전문지식과 분석·종합적 능력을 요구하는 공정거래분야의 전문자격제도 즉, 공정거래사제도 도입은 오히려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없지 않다.

경쟁당국의 입장에서 공정거래사 제도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시장경제를 창달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은 본질적으로 사후적인 것으로 위반행위의 적발과 시정에는 많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된다.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장구조와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사 제도는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사업자와 일반국민의 인식을 제고시켜 기존의 거래관행이나 약관 등에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거래시 대개 불리한 지위에 있어 범위반행위를 감내하도록 강요당하거나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행위사실 및 법률관계,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권익구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공정거래법에 대한 상담, 지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한 계약이나 거래형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사건발생시 공정거래사가 사업자를 대행하여 권익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발생시, 대기업은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그러하지 못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변호사 접근비용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자금과 인력이 이주 영세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발생시마다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공정거래법 전문변호사는 더욱 희소하다. '97년의 경우 위원회에 접수된 전체사건 1,861건중 1,537건이 신고사건인데 신고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이 신고한 사건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신고단계나 사건조사단계에서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98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 공정거래 관련사항을 상담, 지도, 사건절차대행 등을 하는 공정거래전문가제도의 도입이 적극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를 한 바 있다.

'97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사건 수는 2,200건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종결처리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961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촉진이라는 공익을 확보해야 할 위원회가 사업자간의 사적 이해다툼에 가까운 사건의 확인과 처리에 인력과 시간을 소모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은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고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신고 내용의 확인 등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도 상당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사건증가비율이 연평균 35%~40%에 이르고 있는 바, 공정거래사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 중 '공정거래사건'이 아닌 것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screening)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공정거래사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공정거래사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충분하며, 중요한 것은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겠다. 공정거래사 제도의 도입방안이 논의되자 관련 공무원의 노후보장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많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원칙적인 방향만 제시해 보고자 한다.

공정거래사 자격은 소정의 자격시험을 합격하는 자에게만 부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사건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정거래법 등 경쟁법 관련 과목과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과목을 내용으로 하는 자격시험을 실시하되, 선발정원을 미리 정해 놓기보다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는 모두 합격자로 선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관련공무원의 노후보장용 자격증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의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등과는 달리 일정 기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관련분야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시험을 면제하는 특혜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공정거래사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공정거래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단독 또는 합동으로 사무소를 개업하는 등 공정거래사 직무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권위있는 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품위유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를

위해 등록절차를 두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공정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를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합격 후 기업체에 취직하여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굳이 실무수습 및 등록을 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공정거래사는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우선,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문건설협회 등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상담, 지도 및 교육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신고서 작성, 사전수행 등 실질적인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변호사사무소 등에 고용되어 관련업무를 수행하거나 공정거래사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사무소를 개업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사가 하는 업무로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관련 상담·지도·교육, 공정거래제도 관련 신고·신청¹⁾의 지원 또는 대행업무, 범위반행위 및 불공정계약에 대한 신고·심사청구²⁾,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신청³⁾, 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의 대리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각종자료의 작성·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업무를 공정거래사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누구든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자격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1) 기업결합의 신고(공정거래법 제12조), 공정경쟁규약 작성 및 심사요청(법 제23조제4항 내지 제5항), 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법 제25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지정 신청(법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계약신고(법 제30조), 국제계약의 심사요청(법 제33조), 공동행위 인가신청(법 제19조) 등
 2) 공정거래법 제49조, 하도급법 제22조, 약관법 제19조
 3) 공정거래법 제53조 및 제53조의2, 하도급법 제27조
 4) 공정거래법 제52조, 하도급법 제27조

대가는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격시험과목, 실시방법, 구체적 업무범위 등은 공정거래법의 개정시 확정될 것이다.

3. 맺는 말

최근 공정거래사건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고 시장개방이 확대되며, 공정거래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공정거래사건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질서와 규범이 OECD, WTO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균일화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정거래사 제도의 도입은 단순히 공정거래사건 신고나 업무처리를 대행해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 경제가 진정한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 대한 의식이 확립되어야 하고 공정거래법·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 공정거래사 제도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

게 추진하여 대외신인도를 제고해 나가는 데 있어 경쟁주창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사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우선 각 기업체,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에서 공정거래사가 공정거래업무의 상담·지도·교육을 담당하고 또한, 거래상 불리한 지위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중소기업에 서비스제공 및 관련업무를 대행하게 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공정거래 질서가 확산되어 나갈 것이다. 또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신고·신고업무대행을 통해 시간·비용측면에서 편익을 제공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사건의 신고서 작성 및 사건수행 업무를 공정거래사가 대행함으로써 사건구성에 필요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관련증거자료의 조사 또는 수집에 소요되는 행정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시장경제의 창달과 공정거래질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사 제도는 반드시 그리고 가능한 한 조속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제도가 국민 각계각층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는 공정거래 전문지인
 월간 「공정경쟁」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쟁」지는 공정경쟁 사회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
 관계전문가들과 함께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과 토론하고자 합니다.
 참신하고 의욕적인 여러분의 글을 다음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